

광주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1나6323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1나63234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가단50004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환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김수지

변론종결 2022. 7. 8.

판결선고 2022. 7. 22.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가단500046 판결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19. 12. 7. 체결된 별지 기재 물품대금계약을 35,280,92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5,280,9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물품대금계약을 35,350,22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350,2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액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인정근거] 중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거래회신결과”를 “제1심법원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약정 체결의 경위 및 그 이후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물품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선의이다.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과 소유권이전, 이 사건 전대차계약, 이 사건 물품양도계약은 이 사건 약정에 기해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약정 전체로 판단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약정 체결의 경위

① D이 2018년 8월말 피고의 남편 R에게 경남 마산 소재 S마트에 투자를 권유, R이 그 무렵부터 2019. 8. 2.까지 4억 6,000만 원을 투자 → ② 피고는 2019. 8. 28.경 D에게 2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투자금 및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D 소유 부동산(광주 북구 E, F 각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 → ③ 위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 → ④ 피고가 D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요구 → ⑤ 피고, D, 주식회사 C 사이에 이 사건 약정 체결

2) 이 사건 약정 이후의 사정

①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9. 12. 18. 주식회사 C와 이 사건 마트에 대한 전대차계약체결, 2019. 12. 19. ~ 2020. 1. 2.경 마트에 진열된 물품에 대한 대금 지급, ② 2019. 12. 18. D 소유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종전 근저당권 말소,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③ 이 사건 마트의 물품납품업자들이 피고와 D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2020. 3. 9.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 ④ D의 채권자인 소외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114567 사건에서 2020. 11. 28.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D의 채권자인 T이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29262 사건에서 2021. 11. 9. 피고에 대하여 패소 판결 선고, ④ 피고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제기한 2020가합52547 사건에서 2021. 1. 28. 승소판결

나. 판단

1) 사해행위 여부

제1심의 변론 결과에 이 법원이 추가로 심리한 내용을 보태어 보아도, 주식회사 C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약정으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이 사건 마트에 진열된 물품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이상, 이 사건 물품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약정의 체결의 경위나 그 이후의 사정은 이 사건 물품양도계약의 사해행위성을 부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이 사건 물품양도계약이 진정한 양도계약으로서 형법 제327조에서 정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 등은 사해행위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가 들고 있는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114567, 2020가단529262 사건은 각 채무자가 D인 사건으로, 주식회사 C가 채무자인 이 사건과는 채무자가 다르다).

또한 사해행위의 성립여부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약정은 그 계약목적물인 부동산이 원고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C의 소유가 아니라 D의 소유이고, 따라서 원고를 비롯한 주식회사 C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D 소유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이 사건 물품양도계약, 이 사건 전대차계약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처분행위로 인하여 주식회사 C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물품양도계약의 사해행위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선의 여부

주식회사 C의 이 사건 물품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물품양도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다. 소결

1) 결국 이 사건 물품양도계약은 주식회사 C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여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물품양도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2) 다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를 확장함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고쳐 쓴다.

가) 제1심판결 중 7면 8행부터 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가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물품양도계약에서 정한 물품가액이 2억 원으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35,280,927원{= 원금 27,796,448원 + 이에 대한 2020. 3. 2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22. 6. 17.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7,484,479원[= 27,796,448 × 12% × (2년 + 89일/365일), 원 미만 버림]}을 초과하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35,280,927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제1심판결 중 7면 16행부터 2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물품양도계약을 35,280,92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5,280,9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김효진, 판사 김영아, 판사 김성흠

별지